

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1. 24.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20.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5.까지	목	각급선거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 4.(월)]	법§53①②
3. 5.부터 6. 3.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2.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4.부터 6. 3.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2.부터 5. 16.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법§65⑤
5. 14.부터 5. 15.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2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1.부터 6. 2.까지	목 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
5. 22.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첨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5⑥ 규§30⑤ 법§64② 규칙§29②⑤
5. 22.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5. 24.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10일까지 선거일전 10일까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147⑧ 법§65⑥, 154①⑤, 규§77 법§65⑥, 153①, 규§76
5. 29.부터 5. 30.까지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3.	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법 제10장 법 제11장
6. 1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가액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8. 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부일정

※ 「공직선거법」은 “법”,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은 “정금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병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병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토론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자법”으로 약기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상 시	기부행위제한	누구든지	상 시	법§112 ~ §117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서면신고 (정당, 방송,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 등은 제외) ※ 여론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	누구든지		법§108③
'25. 12. 22.(월) 부터	전과기록(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 전 15일부터	법§49⑩
'26. 1. 15.(목) 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1. 24.(토)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법§60의3, §122 규§26의2③ §51① 교자법§49①
2. 2.(월)부터 7. 3.(금)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8의2, §8의3
2. 3.(화)부터 7. 3.(금)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관할위원회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 지체 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61의2①③ 정금법§34①④ 정금규§32② §34①
2. 3.(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교자법§49①
2. 20.(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사·도의원, 지역구자치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 2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법§60의2②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규§24②
	피선거권 조회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법§60의2③ 규§26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지체 없이	법§61①, §63① 규§28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지체 없이	법§62③④, §63① 규§28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려는 때	법§60의3② 규§26의2①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규§2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변경 신고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②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신고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 (수회에 걸쳐 발송하려는 경우 최초 신고 시 일괄신고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 전 2일까지(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발송)	법§60의3① 규§26의2⑤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발간 즉시	법§60의4①③ 교자법§49①
2. 3.(화)부터 6. 3.(수)까지	시·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시·도위원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의3② 규§2의4①
3. 1.(일)부터 5. 20.(수)까지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대표자	방송일 전 3일까지 (방송연설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137의2①⑥ 규§60의2
3. 5.(목)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교육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제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90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법§53①② 교자법§47①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 자치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해당 기관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3. 5.(목)부터 5. 3.(일)까지	당원집회 개최신고 <개최지역 관할 구·시·군위원회>	정 당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금지)	법§141①② 규§63①
3. 5.(목)부터 5. 13.(수)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법§82의3①
3. 5.(목)부터 6. 3.(수)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누구든지		법§103⑤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①
	딤페이커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법§82조의8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4. 4.(토)부터 5. 20.(수)까지	선거기간 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82① 규§45④
4. 4.(토)부터 6. 3.(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4. 4.(토)부터 6. 13.(토)까지	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	각급 위원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0의2② 규§2의3②
	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추가 구성·운영	중앙위원회		법§10의3① 규§2의4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운영	구·시·군위원회		법§146의2 규§67①
4. 5.(일) 이전부터	후보자 거주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법§16③
4. 21.(화)부터 5. 20.(수)까지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을 위한 언론기관의 지지율 여론조사결과 수집기간	언론기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법 § 82의2④ 토론통규 § 22
5. 1.(금)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법§65⑦
5. 2.(토)까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정·공고	중앙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 10일까지	규§11⑥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구·시·군의 장		법§38③
5. 4.(월)까지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의 사직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	선거일전 30일까지(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
	읍·면·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범위 등 결정·공고·통지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선거일 전 30일까지	법§13③ 규§3③④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 전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까지	법§71⑤ 규§36① 교자법§49①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 지정·통보 <중앙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	후보자 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을 통보하는 때	법§73① 규§38①⑥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 <관할 토론위원회에>	공영방송사	선거일 전 30일까지	토론통규§27②
5. 9.(토)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구·시·군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법§60의3④
5. 9.(토)부터 5. 15.(금)까지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교육감선거후보자,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시까지	법§48②④ 교자법§49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5. 11.(월)까지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통지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공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선거구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법§64③, §65⑬ §66⑧ 교자법§49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통지 <정당·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비례대표사·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통지는 후보자등록시에)	법§71⑥ 교자법§49①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법§31③ 규§7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부대장, 경찰관서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65⑤
5. 12.(화)부터 5. 16.(토)까지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 사항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 지체 없이	법§39② 규§12①
	선거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①,§204① 규 § 10
	거소투표신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법§38①, 규§11①②,§120②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38⑤,§204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군 인· 경찰공무원		법§65⑤	
5. 14.(목)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규§10⑥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본(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법§37④, §38⑥
5. 14.(목)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 3일까지	법§40③ 규§13③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확인 기간 및 방법 등 공고			법§44②③
5. 14.(목)까지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 <관할 토론위원회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선거일전 20일까지	토론규 § 27③
5. 14.(목)부터 5. 15.(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선거구위원회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등록신청 시	법§49④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등록신청 시	법§49④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감선거]			교자법§49③
	비당원확인서 제출 [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관리 규칙 §2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규§21
	기탁금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법§49④, §56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 신청 시	법§71⑥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규§24②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설치·변경신고 <관할 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지체없이	법§61①, 63①, §205 규§28①, §12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 <관할 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63①, §205 규§28①, §12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임·교체 신고 시	규§21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변경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②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신고 <관할위원회에>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
	피선거권 조회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49⑧ 규§20③
	전과기록 조회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법§49⑩ 규§20③
	정당·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150③④⑤⑥⑦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구·시·군위원회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 없이	규§71①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 없이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보고 <상급 위원회에>·통지 <하급 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 없이	법§188⑤ §190②③ §191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후보자 사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54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규§22①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 <상급위원회에>, 통지 <하급위원회에>·통보 <지방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하여 한국 방송공사에>	선거구위원회	지체 없이	법§55 규§38⑦ 교자법§49①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추천정당에>	선거구위원회		법§52④
	정강·정책홍보물 2부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배부 전까지	법§138④
	정책공약집 2권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관할위원회에>	정당 (판매할 당부)	발간 즉시	법§138의2③
	정당기관지 2부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발행 즉시	법§139③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 <시·도위원회에> [사·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광고 전까지	법§69⑤ 교자법§49①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사·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방송시설 경영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70③ 규§35① 교자법§49①
	선거공약서 배부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제출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교육감선거]	후보자	신고 : 배부일 전일까지 제출 : 배부 전까지	법§66⑥ 교자법§49①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후보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때	법§67① 규§32② 교자법§49①
	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후보자	방송일전 3일까지	법§71⑩ 교자법§49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2③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 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등의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려는 때	법§72① 규§37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녹음기 및 녹화기의 표지 교부신청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를 사용하려는 때	법§79⑥⑩ 규§43②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 <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	개최일전 2일까지	법§81③ 규§44①④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할 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려는 때	법§91④ 규§48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불법시설물 표시문 첨부	각급위원회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법§271② 규§145①
	불법인쇄물 공고 <관할 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각급위원회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법§271② 규§145②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해당 우체국장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제외)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	법§272①
	불법선전물 발송중지 사실 통보 <발송인>·공고 <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우체국장	발송을 중지한 때	법§272②
5. 15.(금)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후 보 자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법§73⑤ 규§38② 교자법§49①
5. 16.(토)까지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 마감일까지	법§46⑤ 규§18④
5. 17.(일)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법§44①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규§16①
	거소투표신고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	규§16①②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 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발견한 때마다 지체 없이	규§14④
5. 17.(일)부터 5. 19.(화)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법§40①②, §41① 규§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41②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 계 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법§42①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42②
5. 18.(월)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법§60의3①
	경력방송원고 송부 <한국방송공사(해당 지역방송국)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73①⑤ 규§38② 교자법§49①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선거구위원회, 시·도 또는 중앙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법§73① 규§38⑥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지체 없이	법§74① 규§39①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 전 2일까지	법§74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5. 19.(화)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신고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거소투표신고마감일 후 3일까지	법§149①
5. 20.(수)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공고	구·시·군위원회	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	법§149② 규§70②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청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공고일 후 2일 이내	법§149④
	기표소 설치요청서 사본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후보자 등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때 지체 없이	규§70③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 신고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법§149⑤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 공고	구·시·군위원회	기표소 설치일 전일까지	법§149⑤ 규§70④
5. 20.(수)까지	선거벽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0.(수)부터 5. 21.(목)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군위원회에>	해당 선거권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법§43①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구·시·군의 장, 신청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3②
5. 21.(목)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 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그 비용 납부 <구·시·군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법§46②③ 규§18③
5. 21.(목)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법§33③
5. 21.(목)부터 6. 2.(화)까지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59
5. 21.(목)까지	대담·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통지	사도 및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토론규 § 23①
5. 21.(목)부터 6. 2.(화)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등의 대담·토론회 개최 [사·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사·도의원선거]	사·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② 교자법§49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법§82의2③
5. 21.(목)부터 6. 3.(수)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선거구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법§49① 규§20⑤
5. 22.(금)까지	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구·시·군위원회	제출마감일 후 2일(섬 및 산간오지는 3일)까지	법§64②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해당 상급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정당, 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법§64⑥, §65⑬ 규§29⑦, §30⑫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거짓 사실의 게재 및 사생활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상급위원회, 선거구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 시	법§64⑥⑦, §65⑬ 규§29⑧, §30⑫
	부위원장 추천의뢰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 전 12일까지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선위법§5④ 선위규§5의3①
	보조위원 추천의뢰 <교섭단체를 둔 정당에>			선위법§4⑬ 선위규§5의2②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사유서 제출 ※ 합동토론회 개최동의서 제출	통지를 받은 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토론규 § 23②
	토론회 등의 개최 공표·통지 <정당·후보자,선관위에>	사도 및 구사군 선거방송토론 위원회	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토론규 § 28①
5. 22.(금)	선거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선거일 전 12일에	법§44①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규§16①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시	규§14③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법§44의2①③ 규§16의2①
5. 23.(토)부터 6. 3.(수)까지	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구·시·군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 시마다	규§16의2⑤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44②
5. 24.(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무투표 통지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법§188②,§190②, §191③ 규§109①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거소투표안내문 동봉)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법§65⑥, §154①⑤, §212 규§77
	군인 등 신청자에게 선거공보 발송	구·시·군위원회		법§65⑥
	투표안내문 (접자형 포함) 발송 (선거공보 동봉) <매세대에>	읍·면·동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153① §211④ 규§127
	우편투표함 비치	구·시·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규§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사전)투표소 투표의 뜻 통지 <해당 선거인에게>	구·시·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 없이	법§154② 규§78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5. 25.(월)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첨부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48② 규§68⑤
5. 27.(수)까지	사전투표소 참관인 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7일까지	법§162②,§213③ 규§3③,§88①
	투표용지 모형 공고	구·시·군위원회		법§152① 규§75
5. 28.(목)까지	사전투표소 설비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6일까지	규§68④
	사전투표참관인 지정·선정(사전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읍·면·동위원회		법§162③④ §213④ 규§3③,§88①
5. 29.(금)부터 5. 30.(토)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158
	회송용봉투 인계<우체국에> 및 관내사전투표함 인계 <구·시·군위원회에>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법§158⑥
5. 29.(금)까지	개표소 공고 [2개소 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 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② 규§95②
	점자형 선거공약서 우편발송을 위한 시각장애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 교부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교육감선거]	후보자		규칙§31④
	부위원장 위촉 공고(2개 이상의 개표소 설치 시)	구·시·군위원회		선위법§5④ 선위규§5의3①, §7
6. 1.(월)까지	투표참관인 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213①
	개표참관인 신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 § 181② § 215① 규 § 102①
	사전투표소 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 출력	읍·면·동위원회	사전투표기간만료일 후 2일까지	법 § 44의2④
6. 2.(화)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 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 작성·통지 <읍·면·동위원회에→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법§154③ 규§78③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읍·면·동위원회에> 투표용지, 투표함, 선거인명부 인계<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 수령·보관·인계 시 입회<정당추천위원>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정당추천위원		법§151①⑤ 규§16의2③④
	투표소의 설비	읍·면·동위원회, 투표관리관		법§147① 규§67의2
	투표참관인 지정·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 신고한 인원수가 4명 미달 시)	읍·면·동위원회		법§161③④ §213②
	개표소의 설비	구·시·군위원회		법§173③ 규§95①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법§181③ 규§102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법§161⑤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구·시·군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81② 규§102④
	보조위원 위촉(2개 이상 개표소 설치 시)	구·시·군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선위규§5의2④
6. 3.(수)	투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 제10장
	거소투표 및 사전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법§155⑤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개표소 이송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 이후에	법§176④
	투표함 등 송부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법§170 규§94
개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작성 등)	구·시·군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법 제11장	
	개표록 송부 <선거구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개표록 작성 후	법§185① 규§106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 <상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개표록을 송부 받은 때 지체없이	법§185②
	당선인 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선거구위원회	지체 없이	법§188, §190, §190의2, §191 규§108
6. 3.(수)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까지	법§60②
6. 13.(토)까지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해당 당선인, 소속정당에>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10일 이내	법§193① 규§111
6. 15.(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일 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규§51의3① 민법§161
	정치자금 지원내역 보고 <관할위원회에>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거일후 10일 이내	정금규 § 40②
6. 17.(수)까지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선거인, 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①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②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인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 <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지방선거]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220①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기 <고등법원, 대법원에> [지방선거]	소청인, 당선인, 피소청인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청결정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법§222② §223②
6. 18.(목)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해당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15일까지	규§25④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당해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57②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 에게 위탁징수 요구	선거구위원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57③ 규§25④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 (요청이 있는 경우)	법§49⑨
6. 23.(화)까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20일까지	정금법§40①
7. 3.(금)까지	선거소송 제기<대법원에>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선거인, 정당, 후보자		법§222①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법§57① 규§25①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귀속기탁금 납입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중앙위원회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선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30일 이내	규§25②
	정치자금 회계보고 <해당 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규§51의3①
	당선소송 제기 <대법원에>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정당·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법§223①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병법§9④ 공병령§16
7. 10.(금)까지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 사본의 열람기간·장소 및 사본 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관할위원회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 요구 등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각급위원회 위원·직원 (읍·면·동위원회 제외)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금법§43① 정금규§43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열람 및 인터넷(선거비용에 한함) 공개 <누구에게나>	관할위원회	공고일부터 6개월간	정금법§42②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 <해당 위원회에>	사본교부신청인	공고일부터 언제든지 ※사본교부신청시 수입인지 첨부	정금법§42③ 정금규§41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관할위원회에>	이의있는 자	열람기간 중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요구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관할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42⑥,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해당 위원회에>	회계책임자, 관계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⑥,⑧ 정금규§42③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 등 공고·통지 <이의신청인에게>	관할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 없이	정금법§42⑧
8. 2.(일)이내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지급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후보자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정금법§58①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법§135의2⑤ 규§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135의2⑤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징수 위탁 <국회의원재·보궐선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방선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구위원회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법§135의2⑥
	보전유예비용의 납입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중앙위원회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선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선거구위원회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법§135의2④ 규§59의2③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규§59의2③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보전비용 징수위탁 <해당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의 경우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선거구위원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265의2③
12. 3.(목)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 후 6월 이내	법§60②